

2023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변경된 부분은 **음영 표시함**)

- 제정 2006.03.02.
- 제 1차 개정 2007.11.13.
- 제 2차 개정 2009.05.29.
- 제 3차 개정 2011.04.07.
- 제 4차 개정 2012.02.22.
- 제 5차 개정 2014.04.05.
- 제 6차 개정 2017.03.14.
- 제 7차 개정 2020.10.29.
- 제 8차 개정 2022.11.23.
- 제 9차 개정 2023.12.00.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영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영만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교생활을 함에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1)

[메모:86] com 2023-11-29 15:27
■제2조: (수정) 전북 학교생활규정 문구로 수정.

[메모:1] com 2023-11-29 10:26
■제3조: (삭제) 적용 근거가 전북 학교 생활규정 제1조에 포함됨.

1)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사의 교육권)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전북 학교생활규정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항목별로 명시됨.

■제5조: (수정) 제3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교생활규정 문구로 수정.

제4조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²⁾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4조 【학습에 관한 권리】³⁾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⁴⁾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⁵⁾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256호, 2023.4.28. 타법개정, 시행 2023.4.28.
 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근거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근거.
 5)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

[메모:4] com 2023-11-29 10:27

■제2장: (수정) 전북 학교생활규정 항목 명칭으로 수정.

[메모:5] com 2023-11-29 10:27

■제1절: (추가) ‘제1절 학생의 권리’ 절의 명칭 및 전북 학교생활 규정 내용 추가

[메모:6] com 2023-11-29 10:27

■제6조: (수정) 제4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외)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특성화고등학교 항목)은 조 등과 관련 없으므로 추가하지 않음

[메모:7] com 2023-11-29 10:28

■제7조: (수정) 제5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8] com 2023-11-29 10:28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6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추가

[메모:9] com 2023-11-29 10:28

■제8조: (수정) 제7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8조 내용으로 수정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에 대한 권리】 7)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8)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제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사생활의 자유】 10)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제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1)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에 근거
 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0조에 근거
 8)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 근거.
 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4219(2018.7.5.)-“편안한 교복착용관련 안내”
 10)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 근거,
 1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 근거,

[메모:10] com 2023-11-29 10:29

■제9조 (수정) 제8조로 조항 번호 수정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항 내용 추가

[메모:11] com 2023-11-29 10:29

■제10조 (수정) 제9조로 조항 번호 수정, 조항 명칭을 '안전에 대한 권리' 로 수정

[메모:12] com 2023-11-29 10:29

■제11조 (수정) 제10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13] com 2023-11-29 10:29

■제12조 (수정) 제11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1조 내용으로 수정
■(제외)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2항(교복 문합)은 초등과 관련 없으므로 추가하지 않음

[메모:14] com 2023-11-29 10:29

■제13조 (수정) 제12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3조 내용으로 수정

[메모:15] com 2023-11-29 10:30

■제14조 (수정) 제13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4조 내용으로 수정

[메모:16] com 2023-11-29 10:30

■제15조 (수정) 제14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5조 내용으로 수정

[메모:17] com 2023-11-29 10:30

■제16조 (수정) 제15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18] com 2023-11-29 10:30

■제17조 (수정) 제16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3항을 전북 학생인권 조례 제17조 제3항 문구로 수정

[메모:19] com 2023-11-29 10:30

■제18조 (수정) 제17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20] com 2023-11-29 10:31

■제19조 (수정) 제18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1항~제6항의 내용을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8조 내용으로 수정함.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12)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13)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14)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표현의 자유】 15)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7조 【건강에 관한 권리】 16)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생리 중인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서 공결로 처리한다.
- ③ 학생은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관련)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17)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1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5조에 근거.

1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근거.

14)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근거.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에 근거.

1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에 근거.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⑥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메모:21] com 2023-11-29 10:31
 ■제20조 (수정) 제19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19조 【동아리활동】

-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메모:22] com 2023-11-29 10:31
 ■제21조 (수정) 제20조로 조항 번호 수정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19조의 제3항 내용을 추가함.

제20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8)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 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메모:23] com 2023-11-29 10:31
 ■제22조 (수정) 제21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0조 내용으로 수정함.

제21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9)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메모:24] com 2023-11-29 10:31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1조의 조항을 추가함

제22조 【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8)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근거.
 1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근거.

[메모:25] com 2023-11-29 10:31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2조의 조항을 추가함

[메모:26] com 2023-11-29 10:31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3조 제1 조~제2조의 내용을 추가함

[메모:27] com 2023-11-29 10:32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4조 제1 조~제3의 내용을 추가함

[메모:28] com 2023-11-29 10:32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5조의 조항을 추가함

[메모:29] com 2023-11-29 10:32

=(추가)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26조의 조항을 추가함

[메모:30] com 2023-11-29 10:32

=(추가) 제23조 (수정) 제28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 27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메모:31] com 2023-11-29 10:32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24항목을 추가함

제23조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2절 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제30조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제31조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제32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제33조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제34조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제35조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제36조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제37조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제38조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제39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제40조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1조 【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품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수업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메모:32] com	2023-11-29 10:32	■제2절: (추가) '제2절 학생의 책임' 절의 명칭 및 전복 학교생활규정 내용 추가
[메모:33]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1항목을 추가함
[메모:34]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2항목을 추가함
[메모:35]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3항목을 추가함
[메모:36]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4항목을 추가함
[메모:37]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5항목을 추가함
[메모:38]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6조 1항목을 추가함
[메모:39] com	2023-11-29 10:33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7조 1항목을 추가함
[메모:40] com	2023-11-29 10:34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8조 1항목을 추가함
[메모:41] com	2023-11-29 10:34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9조 1항목을 추가함
[메모:42] com	2023-11-29 10:36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10항목을 추가함
[메모:43] com	2023-11-29 10:37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4조 11항목을 추가함
[메모:44] com	2023-11-29 10:48	■(수정) '학생의 기본 생활' 로 명칭 수정
[메모:45] com	2023-11-29 10:49	■제24조: (수정) 제41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5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메모:46] com	2023-11-29 10:50	■제25조: (수정) 제42조로 조항 번호 수정, '수업 태도' 로 명칭 수정 ■(추가) 2023 전복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6조 제6항~제7항의 내용을 추가함

- ⑦ 수업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과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⑪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43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44조 【용모】 20)

- ① 용의복장의 일괄 규제는 하지 않으며,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② 두발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모양으로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절 교외생활

제45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 ② 노약자를 도와줄 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③ 외부 단체 주관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공중도덕과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본드, 가스흡입)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0)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의거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이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메모:47] com 2023-11-29 10:50
 ■제26조 (수정) 제43조로 조항 번호 수정, '휴식시간과 여가활동'으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7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메모:48] com 2023-11-29 10:50
 ■제27조 (수정) 제44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49] com 2023-11-29 10:50
 ■제28조 (수정) 제45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50] com 2023-11-29 10:51

■제29조 (수정) 제46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4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메모:51] com 2023-11-29 10:51

■제30조 (수정) 제47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47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③ 방과 후, 휴일 등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알았을 때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⑥ 화장실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사용한다.

[메모:52] com 2023-11-29 10:51

■제31조 (수정) 제48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48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담당교사에게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메모:53] com 2023-11-29 10:52

■제32조 (수정) 제49조로 조항 번호 수정, '개인 소유물'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9조의 내용으로 수정함(제12조 사생활의 자유와 증복 내용 삭제)

제49조 【개인 소유물】

-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메모:54] com 2023-11-29 10:52

■제33조 (수정) 제50조로 조항 번호 수정, '소지·사용 금지 물품'으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10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50조 【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③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1. 소지 금지 물품

-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나,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다.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라.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마.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사.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아.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2.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가.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나.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34조 (수정) 제51조로 조항 번호 수정, '소지 물품 조사' 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1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35조 (수정) 제52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2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36조 (수정) 제53조로 조항 번호 수정, '소정보통신 윤리' 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4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37조 (수정) 제54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전자기기 사용' 으로 명칭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3조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2항~제3항 물품 관리 내용은 제52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에 통합하고, 제4항은 제42조 '수업태도' 제11항과 중복되어 삭제함.

제51조 【소지 물품 조사】

- ① 제5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52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한 경우 보관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53조 【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54조 【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돌려준다.
- ③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메모:59] com 2023-11-29 10:54

■제38조 (삭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음.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사안보고 시 장애여부를 확인하여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있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기구와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 및 조치함.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7조의 제2항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로 작용함.

[메모:60] com 2023-11-29 10:54

■(수정) 제4장의 명칭을 '학생교육'으로 수정하고, 정제는 제 5장으로 분리함.

[메모:61] com 2023-11-29 10:55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14조의 내용을 추가함.

[메모:62] com 2023-11-29 10:55

■제39조 (수정) 제56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38조 【장애학생의 보호】 (항신설 '12. 2. 22)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 ② 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경장계(사과, 접촉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와 중장계(학급교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진학) 조치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4장 학생교육

제55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 【체벌금지】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지도를 할 경우, 체벌(體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개정 '11. 4. 7).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1)

- ① 도구에 의한 체벌금지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금지
- ③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금지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금지

[메모:63] com 2023-11-29 10:55

■제40조-제41조 (수정) 제57조로 조항 번호 수정,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명칭 수정함.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6조 내용으로 수정함.
 ■(추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제14조의 내용을 추가함.(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8항과 제9항은 2023 영안초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므로 간소화하여 추가함.)

제57조 【생활지도의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14조에 따른 보상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21)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협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57조 제4항에 따른 훈육과 제5항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7조에 제1항 조인 또는 제3항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의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학교의 장은 제6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은 제51조에 따라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9. 교원은 제52조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0. 교원은 제6호 다목·라목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조인, 제2항에 따른 상담, 제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위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메모:64] com	2023-11-29 10:57
■제42조 (수정) 제58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65] com	2023-11-29 10:57
■(수정) 제2절의 명칭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제5장으로 분리함	
[메모:66] com	2023-11-29 10:58
■제43조 (수정) 1항을 제59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17조 내용으로 수정함.	

■제43조 (수정) 2항을 제60조로 조항 번호 수정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8조 내용을 추가함.

■제43조 (수정) 3항을 제61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19조 내용으로 수정함.

■(삭제) 2023 영민초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59조, 제62조, 제67조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제45조 (수정) 제62조로 조항 번호 수정, 1항~4항을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20조 1항~4항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60조 【위원회의 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교무부장, 1-6학년부장,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2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1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사안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학생·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의 원칙】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 ④ 제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2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학교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 (수정) 제63조로 조항 번호 수정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산안 제20조 제 2항의 내용을 추가함.

제63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초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제47조 (수정) 제64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64조 【징계의 방법】 23)

- ① “학교 내의 봉사²⁴⁾”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²⁵⁾”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초치 포함) 동안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8조 (수정) 제65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65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급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23) 복수 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반드시 하나의 징계만 할 수 있음. 징계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정한 기간과 동일해도 됨

24)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25)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가능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5.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는 지정된 장소까지 학부모가 학생과 동행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 【징계내용 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67조 【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 ①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와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가 징계와 징계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결과가 통보된 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매모:74] com 2023-11-29 12:03
=제49조 (수정) 제66조로 조항 번호 수정

[매모:75] com 2023-11-29 12:03
=제50조 (수정) 제67조로 조항 번호 수정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20조 제4항의 1-3호
내용을 제50조 3항에 추가함.

[매모:76] com 2023-11-29 12:03
=제51조 (수정) 제68조로 조항 번호 수정

[매모:77] com 2023-11-29 12:03
=추가)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21의 내용을 추가함.

제70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메모:78] com	2023-11-29 12:04
=제52조 (수정) 제70조로 조항 번호 수정	
[메모:79] com	2023-11-29 12:04
=제5장 (수정) 제6장으로 장 번호 수정,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명칭 수정	
[메모:80] com	2023-11-29 12:04
=제53조 (수정) 제71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23조 3 내용으로 수정함.	
=위원회 구성 인원(7인 이상 13인 이하), 학생 위원의 비율(전체의 40%이상)은 그대로 반영함.	

제6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71조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 【개정안의 발의】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메모:81] com	2023-11-29 12:04
=제54조 (수정) 제72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22조 제1항~제2항의 내용으로 수정함.	

[메모:82] com 2023-11-29 12:05

■제55조 (수정) 제73조로 조항 번호 수정, 2023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22조 제4항의 내용으로 수정함.

제73조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치회의 회의
- ②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 ③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 ④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메모:83] com 2023-11-29 12:05

■제56조 (수정) 제74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74조 【심의 및 결정】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메모:84] com 2023-11-29 12:05

■제57조 (수정) 제75조로 조항 번호 수정

제75조 【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메모:85] com 2023-11-29 12:05

■(추가) 2023년도 시행 부칙 추가함.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52조 관련)

[제52조제 4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하교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관리함 ※ 물품보관일지는 교무실에 보관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57조 관련)

[제57조제4항의 제6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 하교 시간 등)	점심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자리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아침자습, 점심, 하교 시간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은 (1순위) 교감, 교장이 지원하며, 1순위 교원이 도움을 요청한 경우 (2순위) 교내 보결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서식 모음]

서식1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증계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영만초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1/1쪽)

학생 성명	
학년/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자료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만초등학교장 귀하

<영만초등학교>

일 자	2023. 11. 1. (금)		확인(서명)	특별실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내 용	1	장0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개위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5540 안00(5/1,7/5)
특이 사항	1. 5540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5540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보호자님께!

영만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7조(훈육)제4항제6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63-850-4800

년 월 일

영 만 초 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OOO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엷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만초등학교장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만초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영만초등학교장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만초등학교장 귀하

성찰하는 글쓰기

(1/1쪽)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